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92

발의연월일: 2024. 8. 28.

발 의 자:문대림・이기헌・김한규

이원택 • 조계원 • 임오경

신정훈 • 윤준병 • 박홍배

황명선 · 윤종군 · 위성곤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국인이 신성장·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3%~25%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규정이 미비함.

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RE100(Renewable Electricity 100%) 달성을 위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 특히,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(Inflation Reduction Act, IRA)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대하여 30%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.

이에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30%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,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 8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8(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하여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(이하 이 조에서 "재생에너지"라 한다)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에투자하거나 지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투자 또는 지출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 또는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 또는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.
-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 또는 지출 금액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4조제1항 중 "제25조의6, 제25조의7"을 "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25조의6, 제25조의7"을 "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6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25조의6 제25조의6 제25조의8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5조의8(재생에너지 시설투자
	등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
	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
	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
	중립・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
	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
	하여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
	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<u>」</u>
	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
	(이하 이 조에서 "재생에너지"
	라 한다) 시설로서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비
	용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
	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
	는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하거
	<u>나 지출한 금액에 100분의 30</u>
	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
	투자 또는 지출이 이루어지는
	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
	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
	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투자 또는 지

제144조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
① 제7조의2, 제7조의4, 제8조의3, 제10조, 제12조제2항, 제12조의3, 제12조의4, 제13조의2, 제13조의3, 제19조제1항, 제24조, 제25조의6, 제25조의7, 제26조,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, 제29조의7, 제29조의4, 제96조의3, 제30조의4, 제96조의3, 제104조의4, 제104조의15, 제104조의2, 제104조의25, 제104조의3

<u>물이 2개 이상의 파세연도에</u>
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
그 투자 또는 지출이 이루어지
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
도에 투자 또는 지출한 금액에
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.
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
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
<u>야 한다.</u>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
용할 때 투자 또는 지출 금액
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44조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
①
<u>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</u>
<u>ʌ</u>]

0, 제104조의32, 제122조의4제1 항, 제126조의6, 제126조의7제8 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 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 2항, 제12조의3, 제12조의4(종 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 한다)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 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 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 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 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 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 세[사업소득(제96조의3 및 제12 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 는 소득을 포함한다)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]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.

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

 ©
②

제7조의2, 제7조의4, 제8조의3, 제10조, 제12조제2항, 제12조의 3. 제12조의4, 제13조의2, 제13 조의3, 제19조제1항, 제24조, 제 <u>25조의6, 제25조의7</u>, 제26조,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, 제 29조의7, 제29조의8, 제30조의3, 제30조의4, 제96조의3, 제99조 의12, 제104조의8, 제104조의14, 제104조의15, 제104조의22, 제1 04조의25, 제104조의30, 제104 조의32, 제122조의4제1항, 제12 6조의6, 제126조의7제8항 및 법 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 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(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 다)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 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 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.

③ (생략)

③ (현행과 같음)

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---